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여성가족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61호, 2024. 10. 16. 공포, 2025. 4. 17. 시행)됨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의 목적, 자료 등의 범위, 자료 등의 확인 방법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른 출연기관 「성폭력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정하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센터장, 팀장, 팀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2. 20. ~ 2025. 1.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이라 한다)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제4조의4 및 제4조의5로 하고,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법 제7조의3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요청의 목적
2. 자료 등의 범위
3. 자료 등의 확인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자료 등의 확인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출연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연기관
3. 다음 각 목의 법인이나 단체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라.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피해자 지원 업무를 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다.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사업 내용으로 정한 법인이나 단체

4.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또는 「법률구조법」 제4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5.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제7조 중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를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를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통합지원센터”를 “통합지원센터·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에 라목과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제2호의 개별기준 외에 통합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행정지원인력 등 종사자에게 필요한 자격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라.	1) 센터장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득자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분야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중 양 다 지 털 성 범 죄 피 해 자 지 원 센 터 에 근 무 하 는 종 사		나)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성폭력 등 방지 관련 분야에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3급 이상으로 임용 후 성폭력 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상담학, 심리학, 여성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의 사회과학분야 또는 컴퓨터 공학 등의 정보통신·전산 등의 분야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학위와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1) 박사학위 취득자로 3년 이상의 경력(학사학위 취득 후 박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석사학위 취득자로 6년 이상의 경력(학사학위 취득 후 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자로 8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팀장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득자로 성폭력 등 방지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성폭력 등 방지 관련 분야에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4급 이상으로 공무원 임용 후 성폭력 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상담학, 심리학, 여성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의 사회과학분야 또는 컴퓨터 공학 등의 정보통신·전산 등의 분야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학위와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1) 박사학위 취득자로 1년 이상의 경력(학사학위 취득 후 박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석사학위 취득자로 3년 이상의 경력(학사학위 취득 후 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자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		으로 정보처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팀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성폭력 등 방지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1) 센터장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성폭력 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또는 출자출연기관) 4급 이상으로 임용 후 성폭력 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성폭력 등 방지 관련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상담학, 심리학, 여성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의 사회과학 분야 또는 컴퓨터 공학 등의 정보통신·전산 분야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학위와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1) 박사학위 취득자로 사람으로 1년 이상의 경력(학사학위 취득 후 박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석사학위 취득자로 3년 이상의 경력(학사학위 취득 후 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자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지 역 다 지 털 성 범 죄 피 해 자 지 원 센 터 에	2) 팀장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득자로 성폭력 등 방지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성폭력 등 방지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8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

근 무 하 는 종 사 자		서 임직원으로 임용 후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상담학, 심리학, 여성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의 사회과학 분야 또는 컴퓨터 공학 등의 정보통신·전산 분야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학위와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1) 석사학위 취득자로 1년 이상의 경력(학사학위 취득 후 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학사학위 취득자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보처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팀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성폭력등 방지 관련 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9급(상당) 또는 공공기관에 임용 후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제2호의 개별기준 외에 통합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행정지원 인력 등 종사자에게 필요한 자격기준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신 설>

<신 설>

③ ~ ⑤ (생 략)

<신 설>

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법 제7조의3 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7조의3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요청의 목적

2. 자료 등의 범위

3. 자료 등의 확인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자료 등의 확인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출연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연기관

3. 다음 각 목의 법인이나 단체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상담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

라.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u>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피해자 지원 업무를 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u> <u>마.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u> <u>을 사업 내용으로 정한 법인</u> <u>이나 단체</u> 4. 「<u>법률구조법</u>」 제8조에 따른 <u>대한법률구조공단(또는 법률구조법)</u> 제4조에 따른 <u>법률구조법인</u>) 5. 「<u>변호사법</u>」에 따른 <u>대한변호사협회</u>
<u>제4조의3·제4조의4</u> (생략) 제7조(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 <u>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u>	<u>제4조의4·제4조의5</u> (현행 제4조의3 및 제4조의4와 같음) 제7조(종사자의 자격기준) ----- <u>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u> -----.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연 락 처	(02) 2100 - 6163